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04.12.)

조례안 · 일반의안
심 사 보 고 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3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4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5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6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30
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8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9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10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11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6
12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	60

의안번호 제2023 - 30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4. 12.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23.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3.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가. 제안이유

○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위원 명칭변경(안 제9조)

1) 건설과장 ⇒ 건설교통과장

○ 법령입안원칙에 맞게 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 정비(안 제15조~제17조)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전문분야별 등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함

○ 이미 실효된 규정 정비(안 제18조, 조례 제2634호 부칙 제3조)

1) 거창읍 지역회의에 관한 특별규정 삭제

2) 유효기간(2021. 12. 31.까지)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이번 조례 개편안은 2023. 1. 9. 행정조직 개편으로 안전건설국이 신설되고, 국 및 과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수정하였음.

○ 또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제한적인 사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음.

○ 덧붙여 제18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에 있어 거창읍 지역회의에 대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읍·면 지역회의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였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을 “성별”로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및 개선방안,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운영”을 “운영,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으로 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한다.

조례 제2634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17조에 따라 새로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역별, **성별(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있게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④ (생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있게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보건사업소분과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사업소 소관업무 2. 행정복지분과위원회: 행정복지국 소관업무 3. 경제산업분과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업무 4. 농업분과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5조(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및 개선방안,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소관부서의 직제순 상위 부서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및 개선방안,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각 분과위원장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①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역회의는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창읍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거창읍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	제18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①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역회의는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선 위촉한다. 1. 주민예산학교 수료자 2. 예산 및 재정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거창읍 지역회의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회의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삭 제>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거창읍 지역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부칙(조례 제2634호 시행 2021. 4. 28.) 제1조·제2조 (생 략) 제3조(유효기간)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제2634호 시행 2021. 4. 28.) 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 <삭 제>

의안번호 제2023 - 31호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4. 12.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23.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3.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전략담당관 류현복]

가. 제안이유

○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대비로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이전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공공기관등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공공기관등의 유치위원회의 기능·구성 등을 정함(안 제3조~제10조)

○ 유치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정함(안 제11조)

○ 이전공공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12조)

○ 이주직원 이주정착 장려금 및 자녀 장학금 등 지원을 정함(안 제13조)

○ 이전공공기관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14조)

○ 유치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정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이 조례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347개의 공공기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 산하기관, 교육연수 기관 등이 해당됨.

○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발빠른 대응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 및 이전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거창군으로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하기관이나 교육연수·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대학으로서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등”이란 다른 지역에서 거창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등 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등의 효율적 유치활동을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공기관등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전략 및 지원계획의 수립
2.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등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에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등의 명칭을 포함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군수 외의 다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군수인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유치활동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고충사항 발굴·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의 지원
2. 그 밖에 공공기관등의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2. 사무소건축비
3. 임대료(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기관 임대료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등의 이전 비용

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공공기관등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2.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이사비용
5. 그 밖에 이주직원이 군에 이주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유치기여자 포상금) 군수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유치활동 지원(안 제11조)

나.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다.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라.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마. 유치기여자 포상금(안 제1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이전공공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에 따른 지원 비용추계는 어려운 상황임

작성자 전략담당관 류현복

의안번호 제2023 - 32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4. 12.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23.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3.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현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사무과에 신규업무 추가 및 기준인력 증원(정책지원관) 반영 등 조직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정원 증원함(안 제25조)

1) 정원 총수 : 증 3명(793명 ⇒ 796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 증 3명(17명 ⇒ 20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1)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 3명

가) 현행 : **793명**(본청360, **의회17**, 직속기관149, 사업소41, 읍42, 면184)

나) 변경 : 796명(본청360, 의회20, 직속기관149, 사업소41, 읍42, 면18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이 개정안은 2022. 1. 13.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신규업무 추가 및 기준인력 증원 등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793명”을 “79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7명”을 “20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고 한다)의 총수는 793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776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7명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고 한다)의 총수는 796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776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20명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 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96 ~~793~~	360	20 ~~17~~	149	76	73	41	42	184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759 ~~756~~	354	20 ~~17~~	119	46	73	40	42	184
	4급	5	4		1		1			
	5급	39	15	3	6	4	2	3	1	11
	6급 이하	715 ~~712~~	335	17 ~~14~~	112	42	70	37	41	173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7	3		3	3		1		
지도직 (지도사)		28	1		27	27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증원 3명

나. 관련조문: 정원 총수(안 제2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세출	군 비	140	140	140	140	140	700

3. 관련 의견: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으로 현안업무 추진과 행정업무 효율에 기여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2023년 인건비: 140백만원

가. 정원 3명 증원 * 47백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권 해 도

의안번호 제2023 - 3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4. 12.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23.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3.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현수]

가.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시행 2023. 3. 2.)으로 물가수준에 맞추어 숙박비를 합리적으로 인상 조정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내여행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삭제함(안 제4조, 별표 2)

1) 조례로 달리 정하지 않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2) 근거 : 제6조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준용

○ 인용 법령 정비(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2023. 3. 2.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와 별표 2를 삭제하고 제6조에 근거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8호 중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를 “해당 공무원란 중”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삭 제>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7. (생 략)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7. (현행과 같음)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의안번호 제2023 - 34호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4. 12.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23.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3.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현수]

가. 제안이유

○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신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장의 업무에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업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 정비

1) 실비변상 ⇒ 실비 보상(안 제명·제1조·제4조)

2) 어법과 어순에 맞게 문장 정비(안 제5조·제6조)

○ 현행화에 따른 신설(안 제2조·제4조)

1) 업무 :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

2) 실비 보상 : 회의참석수당

○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신요금 지원 신설(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이 조례는 제6조제6항에 통신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이장에게 매월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다만,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이장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는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요즘은 유선전화 시대와 달리 스마트폰 사용으로 대부분의 통신요금이 정액제이므로 전화 통화 횟수와 요금의 상관관계가 약하며

○ 현재 이장들에게 개인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상해보험,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단체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들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 본 조례 개정안의 **제6조제6호 통신요금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함.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실비변상”을 “실비 보상 등”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

제4조 조 제목 “(실비변상)”을 “(실비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여금”을 “상여금・회의참석수당”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 장부 열람, 공공시설 이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장”을 “군수는 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체육·수련대회(군단위)”를 “군단위 체육·수련대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신요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생 략) 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4. (생 략)	제2조(이장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4조(실비변상) ① (생 략)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실비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회의참석수당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 장부 열람, 공공시설 이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4. (생 략) 5. 체육·수련대회(군단위): 연 1회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5. 군단위 체육·수련대회: 연 1회
<신 설>	6. 통신요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이장의 업무 수행 시 필요한 통신비 지원

나. 관련 조문: 사기진작(안 제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21,360	64,080	64,080	64,080	64,080	277,680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통신요금 지원

가. (1차연도) 이장 267명 X 20,000원 X 4개월= 21,360,000원

나. (2차~5차) 이장 267명 X 20,000원 X 12개월= 64,080,000원

작성자 행정과장 권해도

의안번호 제2023 - 35호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4. 12.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23.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3.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활동을 정함(안 제3조)

1) 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2) 활동 : 교육·문화·체육 활동,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일상유지를 위한 필수활동 등

○ 지원 신청 및 결정을 정함(안 제4조)

○ 바우처의 사용지역을 정함(안 제5조)

○ 가맹점의 등록을 정함(안 제6조)

1) 등록 시설 : 체육시설, 문화시설,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2) 등록된 가맹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점검, 이월 및 사용기한, 대금의 지급을 정함(안 제7조~제9조)

○ 바우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이 조례는 만13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원~20만원 상당의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2020년 경남 고성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이어서 옥천군, 보은군, 청양군 등에서 같은 목적으로 시행 중임.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청소년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누리고 기본적인 생활 여건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활동)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문화·체육 활동
2.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3. 이미용 등 일상유지를 위한 필수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으려는 청소년,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신

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바우처의 사용지역)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군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3.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인지를 확인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점검)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의 점검 ·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이월 및 사용기한)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해당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9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0조(바우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나. 관련 조문: 지원 대상 및 활동(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군비	592,000	558,100	528,800	510,400	493,600

3. 관련 의견

관내 청소년들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 역량강화 및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지원대상: 13세~18세 청소년

2. 사업비: 592,000천원 정도

가. 13세~15세 바우처: 180,000천원(100천원x1,800명)

나. 16세~18세 바우처: 380,000천원(200천원x1,900명)

다. 운영비: 32,000천원(시스템 22,000+홍보 등 10,000)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의안번호 제2023 - 36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4. 12.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23.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3.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윤광식]

가. 제안이유

○ 거창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대부료를 감면하고,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군수가 취득한 재산을 신설하는 등 공공기관의 군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부료 감면율 신설함(안 제30조)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3) 근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3조

○ 조성원가로 매각 할수 있는 재산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군수가 취득한 공유재산을 추가함(안 제3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이 조례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통해 군민의 공공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제7항에 대부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제33조(조성원가 매각)에는 제5항을 신설하여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군수가 조성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경우 조성원가 매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제33조제1호 중 “국가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군수가 취득한 공유재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⑥ (생 략)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제33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신 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군수가 취득한 공유재산

의안번호 제2023 - 37호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4. 12.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23.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3.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가. 제안이유

○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1) 현행 : 2023년 12월 31일

2) 변경 : 2028년 12월 31일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원칙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전 조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함.

○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이 조례는”으로 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이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실시계획수립,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토목,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기채”를 “기채(起債)”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단지조성비,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지출, 그 밖의 부대경비

제8조를 제6조로 하고 제9조를 제7조로 하며 제7조(종전 제9조) 조 제목 “(관리·운용)”을 “(준용)”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거창군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실시계획수립,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토목,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시설 등을 말한다. ②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거창군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실시계획수립,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토목,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시설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이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실시계획수립,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토목,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와 세입 등) ① 거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조성부지 분양 수입금 2. 사업 선수금 3. 기채자금 4. 보조금 5. 일반회계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 ② 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치와 세입 등)** ① 거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조성부지 분양 수입금 2. 사업 선수금 3. 기채(起債)자금 4. 보조금 5. 일반회계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 ② 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출, 그 밖의 부대경비 2. 지방채의 상환 원금과 이자 3. 일반회계 전출금	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단지조성비,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지출, 그 밖의 부대경비 2. 지방채의 상환 원금과 이자 3. 일반회계 전출금
제8조(금고의 설치)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6조(금고의 설치)**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9조(관리·운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거창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관련 조문: 설치와 세입 등(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4,000,000	10,000,000	26,700,000	-	-	40,700,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거창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 토지보상 등: 100억원

2) 조성사업비: 367억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의안번호 제2023 - 38호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4. 12.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23.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3.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가. 제안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3. 5. 16.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삭제(안 제3조)

1) 법률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에 해당

2) 근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례에 따라 정비(안 제2조·제5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음

○ 2022. 11. 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16조의2제1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존속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어짐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입)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조 제목 “(관리·운용)”을 “(준용)”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와 세입) 거창군수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세입)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제5조(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

나. 관련 조문: 세출(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지원대상: 발전소주변지역인 남상면, 신원면
2. 주민숙원사업비: 30,000천원

가. 남상면: 15,000천원

나. 신원면: 15,000천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의안번호 제2023 - 39호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4. 12.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23.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3.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가. 제안이유

○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한 우리지역 군민에게 널리 영향을 미치는 지역 문화시설의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군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제처 법령입안원칙에 맞게 정비(안 제1조·제2조·제6조)

1) 목적 :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이므로 인용법령 삭제

2) 정의 : 법령의 정의와 같은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 등의 표현방식에 맞게 정비

○ 지역 문화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정비(안 별표)

1) 신설 :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유지관리

2) 삭제 : 군민을 위한 영화관 활성화 사업, 지역문화를 알리기 위한 관광투어 프로그램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이 조례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2015.12.10. 제정하였고, 2021.3.24.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의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음.

○ 이번 개정사항으로는 제1조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를 삭제하고 "거창군"으로 정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조례가 아닌 우리 군 자치 조례임을 명확히 하였음.

○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는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와 중복되어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조례 제2호(정의) 각 호를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타당함.

○ 또한 정의 규정된 용어를 그 자치법규의 한두 조문에서만 사용하는 데 그칠 때에는 별도로 용어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해당 조항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1회만 나오는 제6조제4항 "지역예술인"의 정의를 해당 조항에서 용어 뒤 괄호 안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군수가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업내용은 별표에 명시하고 있음.

○ 그 중 지역문화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분야에서 지원범위를 영화관과 관광투어 프로그램에 한정하던 것을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유지관리"**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양한 민간 문화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군의 지역문화의 진흥”을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역문화진흥”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6조제4항 중 “지역예술인”을 “지역예술인(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중 지역 문화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
지역 문화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유지관리** ~~㉠ 군민을 위한 영화관 활성화 사업~~ ~~㉡ 지역문화를 알리기 위한 관광투어 프로그램 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군의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를 위한 활동과 사업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지역예술인”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③ (생 략)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유지관리

나. 관련조문: 지역문화 지원사업(안 별표)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3년)
합계	400,000
도비	120,000
군비	280,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3년)

1. 2023년 일시 지원사업

2. 아시아1인극협회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400,000천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조 호 경

의안번호 제2023 - 40호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4. 12.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23.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3.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1) 현행 : 2023년 12월 31일까지

2) 변경 : 2028년 12월 31일까지

○ 세입·세출 등 특별회계 규정 입안원칙에 맞게 정비(전 조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함.

○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세입) 거창군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의료급여사업 효율적 수행

나. 관련 조문: 세출(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계	989,169	1,004,436	1,019,703	1,034,970	1,050,237	5,098,515
국비	120,254	120,254	120,254	120,254	120,254	601,270
도비	30,064	30,064	30,064	30,064	30,064	150,320
군비	838,851	854,118	869,385	884,652	899,919	4,346,925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집행 도모

2. 의료급여의 현금급여지원: 135,125천원

가.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지원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지원

3. 의료급여 행정경비 지원: 15,193천원

4.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및 반환금: 838,851천원

가.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의료급여비 전체의 4퍼센트) 예탁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정순

의안번호 제2023 - 49호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4. 12.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23.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3.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전략담당관 류현복]

가. 제안이유

○ 사업시행자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은 거창군이 시행자로 지정받아 부지를 조성하고 적십자사에 매각할 경우, 개발 및 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되어 현저히 공공성을 훼손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기본원칙에 반함(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923(2022. 11. 3.)

- 대한적십자사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아 사업부지의 2/3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가 필요

○ `23. 3. 3. 거창군↔대한적십자사間 협약체결을 통해 거창군에서 부지 조성 후, 현) 거창적십자병원 부지 및 건물을 교환하는 방식 추진 결정

○ 출산·육아·복지 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행복맘커뮤니티센터 등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중심의 체계화된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군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 업 비 : 15,700백만원

○ 위　　치 : 거창읍 일원

○ 주요내용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건립 등을 위한 부지조성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 18개과/300병상/응급의료센터 등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산후조리 및 신생아를 위한 모자동실
- 행복맘커뮤니티센터 건립 : 영아·임산부관련 통합 서비스 지원

다. 추진경과

○ 2019.11.11. :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복지부)

○ 2021. 7. 16.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적십자사)

○ 2023. 1.13.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타당성조사 최종 용역보고회

- 사업규모, 진료과목 및 병상 수, 직원 수 등

○ 2023.1. ~ 8. : 적십자병원 의료운영체계 용역(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 편익 추가발굴 등 통해 예타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추가용역

○ 2023.2.28.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계획 수립

○ 2023. 3.3. : 거창군↔대한적십자사 간 협약 체결

- 거창군에서 부지를 조성하고 현) 거창적십자병원 건물 및 부지와 상호 교환방식으로 추진 명시

라. 공유재산관리계획과의 관계

1) 관련근거

○ 공유재산법 제10조2(공유재산관리계획)

- 예산의결 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 수립후 지방의회 의결
- 환지방식 외의 도시개발사업은 관리계획 수립 대상(시행령 제7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관리계획의 명확성)

-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을 명확히 해야 함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7호(관리계획의 예외)

-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

2) 추진방향

○ 사업위치를 특정한 후 협의취득이 어려워 수용방식으로 취득할 경우 사업기간 장기화 우려 ⇨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적기에 취득 필요

○ 토지매입이 장기화 될 경우, 자전거래 등의 투기수요와 지장물 설치와 같은 추진상의 장애요인 발생 우려

○ 복수후보지 추진을 통해 매입가능성이 높은 위치, 수요자인 대한적십자사의 병원 운영 적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쳐 사업추진

마. 동의(승인)사항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1)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추진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복지·생활편의시설을 위한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중심의 신시가지 조성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예외규정 적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을 명확히 해야하나,

○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7호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외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부지확정 후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명확성을 확보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 진행**

바. 향후 추진일정

○ 2023. 4. : 용역비 및 부지매입비(일부) 편성

○ 2023. 5. : 군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계획 용역 계약

○ 2023. 4. ~ 8. : 토지소유주 협의, 매입 또는 매도의향서 접수

○ 2023. 9.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및 부지매입비 추가 편성

○ 2024. 2.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 2024. 3. ~ 2025. 2. : 실시계획인가 및 기본/실시설계

○ 2025. 3. ~ 11. : 부지조성공사 시행 및 준공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현재 부지 미확정인 상태이나 여러 후보군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군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계획 용역 계약 전(5월)까지는 부지를 확정하고, 5월 또는 6월 중 확정된 부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임.

○ 5~6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득한 후 일부 필지라도 바로 매입할 계획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부지매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의료복지타운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과 조성이 가장 급선무인 만큼 사업 대상지 매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비용추계서 사유서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비,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추진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연도 (2023년)	2차 연도 (2024년)	3차 연도 (2025년)	합계
총 비용		9,300	3,200	3,200	15,700
세출	용역비	1,300	-	-	1,300
	부지매입비	8,000	3,000	-	11,000
	공사비	-	-	3,200	3,200
	기 타	-	200	-	200

3. 관련 의견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의료·복지·생활편의 등 인프라를 갖춘 쾌적한 시가지 조성 기반 마련으로 군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8호) 및 가감정평가 자료 근거

작성자 : 전략담당관 류현복

관련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